

1. 개정이유

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「지방세징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‘납세자 관리대장’ 서식을 신설하고, 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감치 대상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‘의견진술 신청서’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관련 서식 신설(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, 제7호의3, 제7호의4, 제7호의5 서식)
- 나.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위임장 서식 보완(안 별지 제26호 서식)
- 다.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납세자 관리대장 신설(안 제22조의2 및 별지 제31호의2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고액·상습채납자의 감치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)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도록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.

②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

③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

④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채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·장소 통지서에 따른다.

제22조의2(납세자 관리대장) 영 제3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3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
제5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별표”를 각각 “별표 2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[별지 제26호서식]

(앞 쪽)

[] 징수유예등 [] 체납처분유예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10일(예외적인 경우 즉시)				
납세자	성명(법인명)			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				
	주소(영업소)							
	전화번호(휴대전화)			전자우편주소				
신청내용								
납부할 체납액의 내용						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지방세		
세목	과세연도	과세번호	납부기한(독촉기한)	지방세	가산금	계	지방세	가산금
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의 구분								
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				[징수유예]지방세징수법 제25조 ____호 (____) (____) [체납처분유예]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 ____호(____)				
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기간				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				
납부기한 및 분납금액								
횟수	연도	세목	납부기한	분납금액(A+B)	지방세(A)	가산금(B)		
1회								
2회								
3회								
담보물건								

위와 같이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신청합니다.

____년 ____월 ____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

채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(근거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).

납 세 자	성 명 (상 호)	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	
지방세 채납 명세(총채납세액: 원) (단위: 원)				
세 목 명	납부기한	지방세	가산금	계
감치 내용				
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	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			
감치 기간	일 (최대 30일) ※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6항에 따라 채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			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,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20 . . .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해명 기한까지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감치 신청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	직위(직급)	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	서명	결재권자	직위(직급)	서명
협조자			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시행일자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	일련번호(접수일자)			
우	도로명주소		/ 홈페이지 주소				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		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		/ 공개 구분			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 임 장
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“위임받은 자”에게 징수유예등(채납처분유예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

위임자(납세자 등) (서명 또는 인)					
위임 받은 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위임자와의 관계
				전화번호	
첨부서류	1. 징수유예등(채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. 납세담보제공서(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)				수수료 없음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71호서식 뒤쪽 다목 중 “국민연금관리공단”을 “국민연금공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명자료 목록

제출자	성명(상호)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사업장)
	전화번호
소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	

소명자료 제출 목록

번호	명칭	과세연도	자료 요지	비고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의견진술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신청인	성명(상호)	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(사업장)	
	전화번호	
지방세심의위원회 회부사실 통지를 받은 날	년 월 일	

진술내용

※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

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행 정 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·장소 통지

아래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회의
안건과 관련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근거: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3
항).

신 청 인	성 명 (상 호)	생 년 월 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 소 (사업장)		
회의 안건			
근 거 법 령			
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	일 시	년 월 일	오전: 오후:
	장 소		

출석하실 때는 통지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:)에게 연락하시면
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-연도별 일련번호(접수일자)
우 도로명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 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납세자 관리대장

체 납 자	성명 (법인명)		주민(법인·외국인) 등록번호				
	주소(영업소)						
체 납 현 황							
세목	과세연도	과세번호	독 축		체 납 액(정리보류액 포함)		
			발부일	납부기한	계	지방세	가산금
체납처분비							
합계							
체납독려 및 처분내역							
구분	날짜	독려/처분	내 역				담당자
압류내역							
구분	물건종류	설정/해제일	압류물건				해제사유
경매내역							
사건번호	구분	법원	개시일자	종기일자	교부청구금액	배당일자	배당금
		경매물건					
공매내역							
수임번호	공매기관	공고일자	중지일자	배분일자	배분금액		
구분	공매물건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 쪽)

실 태 조 사			
날짜	내 용	조사자 의견	조사자
생활실태 조사	1. 주민등록(사업자등록) 유무 : 2. 거주(폐업) 사실 유무 : 3. 행선지 : 4. 동거가족 및 동거가족의 소득내역 : 5. 생활자금 원천 : 6. 기타 :		
재산조사	1. 부동산		
	2. 동산, 사업장 잔유재산		
	3. 현금, 예·적금, 주식 등 유가증권		
	4. 거래처 미회수채권, 신용카드 매출채권		
	5. 골프회원권, 기타 재산권		
	6. 연대납세의무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- 공동사업자, 상속인, 증여자, 청산인 등		
	7. 기타	사업장(점포) 등 임차보증금, 물적 납세의무, 납세의무 승계 등	
체납사유		행정제재	
		◦ 출국금지 : ◦ 명단공개 : ◦ 관허사업제한 : ◦ 체납액 및 정리보류액 정보제공 :	
정리보류 결정사유			
징수전망 및 징수대책(조사자 종합의견)			

210mm×297mm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 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6조의2(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)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도록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. ②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소명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 다목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4 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해당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일시·장소 통지서에 따른다.
<신 설>	제22조의2(납세자 관리대장) 영

	제3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은 별지 31호의2 서식에 따른다.
제56조(감정서 및 감정수수료) ① (생략)	제56조(감정서 및 감정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표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세무서장”은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본다.	② ----- ----- 별표 2-----. ----- -----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「국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표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별표 2----- ----- ----- -----.